

◎ **법무부 공고 제2026-224호**

「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일

법무부장관

「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훈령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‘23.3월) 후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채용 절차를 우리 부 훈령으로 격상함으로써 근로자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
- 또한, 최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「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」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기존의 채용 절차를 보완하고, 우리 부 실정에 맞게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-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.

나. 채용원칙 및 채용 절차, 채용 결격 사유 등(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)

- 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함.
- 사용자는 채용시기, 채용규모, 모집단위, 근로조건,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심의기구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.
- 근로자의 채용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「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」의 결격 사유에 따름.

다. 채용 점검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(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)

- 부정합격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을 할 수 있고,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(혁신행정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행정 담당관실(☎02-2110-30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폐지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주소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우편: (13809)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, 정부과천청사 1동 713호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